# -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-결 과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

#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2012.12.13.

#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

「지방자치법」제4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.

# 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와 「충청 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,

자치입법·예산·정책 등 의안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,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·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## 2. 감사기간

○ 2012년 11월 13일(화)부터 11월 25일(일)까지(13일간)

# 3. 감사 대상기관

○ 도 본청 : 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, 문화관광환경국

※ 단, 2012.8.31. 기구가 설치된 청원·청주통합추진단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

○ 직속기관 : 자치연수원

○ 출자·출연기관 : (재)충북문화재단,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
# 4. 감사반 편성

감 사 반		감 사 보 조	
위 원 장	김 희 수	전문위원	한철우
부위원장	심 기 보	전문위원	김보흠
위 원	김 형 근	행정6급	박종원
"	임 현	계약직나급	이제완
"	김 봉 회	행정7급	정광해
"	정 지 숙	속기사	2명

# 5. 감사일정 및 장소

감사일시	대상기관	감사장소
11.13.(월) 10:	현지확인 - 청주국제공항	현지
11.14.(화) 10:	현지확인 -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경기장	"
11.15.(목) 10:	(재)충북문화재단 자치연수원	위원회 회의실 현지
11.16.(금) 10:3	0 행정국	위원회 회의실
11.19.(월) 10:	0 문화관광환경국	"
11.21.(수) 10:	0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	현지
11.22.(목) 10:	공 보 관 감 사 관	위원회 회의실
11.23.(금) 10::	종 합 감 사	

# 6. 주요감사사항

- 2012년도 예산집행사항
- 201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
-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
-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
- 기타,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#### 7. 감사결과

## 가.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(38건)

【공보관: 5건】

- 1. 선택과 집중에 따른 도정홍보 강화
  - 기획보도의 실효성 있는 홍보 강화
  -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밀착형 시책의 홍보 강화
- 2. 도소속 직원의 홍보 역량 강화
  - 도소속 직원의 개인별 직무분야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효과, 기법 등 사례중심의 교육방안 강구
    - ※ 자치연수원과 협의 기존의 홍보마케팅과정 확대 운영방안 등 검토
- 3. 도정홍보 컨설팅, 홍보협의회 운영 내실화
  - 도정홍보의 주무부서인 공보관이 도정홍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,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홍보 테마를 설정하는 등 홍보협의회의 운영 내실화
  - 도정홍보컨설팅 역할 중 미디어 홍보 강화 필요
- 4. 명예 홍보대사 및 도민 홍보대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정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
- 5. SNS 홍보단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
  - 민간인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용방안 강구
  - 블로그기자단 활동시 취재대상의 중요도 반영 필요※ 행사위주의 취재 탈피

#### 【감사관: 5건】

- 1. 부패방지 등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 확대
  - 최근 외부평가에 의하면 충북이 반부패 노력 최하위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필요
  - 유형별 사례별 홍보방안 강구
  - 정기적 청렴교육 및 세미나 등의 실시 방안 강구
- 2. 도민감사관제 운영 개선
  - 도민감사관이 시군간 교차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
  - 도민감사관(실질적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관)의 수당 현실화 검토
- 3. 정기감사 등 감사계획 수립시 시군 일정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
  - 광역단위행사 개최시 시군행사 일정을 고려한 감사계획 수립으로 주요행사 추진시 차질 방지
    - (예, 도민체육대회 기간중 해당시군 감사로 인한 행사진행 차질)
- 4. 공무원 성범죄 등 비위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기능 강화
  - 외부감사 지적의 증가는 도민이 충북도를 불신하는 결과 초래
  -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적극 감사 진행
- 5.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규제에 따른 원인분석 및 조치
  -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해당(오창, 오송 등)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큼
  - 원인분석에 따라 관련 시군 주의 촉구 등 조치 필요

#### 【행정국: 5건】

- 1. 인사운영 합리성 제고
  - 소수직렬의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
- 2. 도민참여기본조례 운영 활성화
  -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 후 집행실적이 없고, 후속조치인 시행규칙 미제정은 집행부 실행의지 부족
  - 도민참여기본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방안 강구
- 3. 기간제의 법적고용기간(2년) 즉각 보장 및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완화된 전환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
- 4. 계약심사제 전문성 강화 및 인센티브제 도입
  - 계약심사제도 실시와 관련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전보제한(5년) 제도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(가점) 등 도입 검토
  - 계약심사부서의 인력 증원
  - 계약심사 관련 DB구축
  - 심사자, 발주부서, 설계자의 공동 현장확인 절차 신설
  - 용역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교육 실시
  - 고의적 과다설계 업체에 대한 벌칙 부과 검토
- 5. 지방세 징수 철저
  - 탈루, 은닉 재산을 적극 발굴 지방세 체납액 감소 노력 철저
  - 결손처분은 최후의 수단임

#### 【문화관광환경국: 10건】

- 1. 도지정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
  -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활성화 방안 강구
  - 특색있는 축제 개발 방안 강구
- 2. 문화예술분야 예산 확보 노력 강화
  - 현재 문화예술분야 예산지원이 전국 최하위임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
- 3. 공항활성화 방안 중 수요창출 방안 중점 연구
  - 저가항공사 유치, 여행사 협약시 블록세일 검토, 성안길 상가, 육거리 시장 등 쇼핑 코스 개발, 사후 면세점 추진 검토
  - 전세기 및 관광객 보조조건에 쇼핑조건 추가,
  - VIP 등 특별고객 대상에 대한 특별 콜서비스 제공 검토
- 4. 문화소외지역 문화욕구 충족 강화
  - 도민교향악단 등의 공연을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확대 필요
- 5. 겨울철 도내 문화재에 대한 화재관리 등 점검 철저
  - 화재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공무원이 정기 및수시점검을 실시할 것
- 6.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
  - 불산가스 노출 등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
  - 대기, 수질, 유독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체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

- 7. 청풍명월 21의 발전적 운영방안 검토
  - 기존 녹색성장위원회, 지속가능발전가능협의회를 청풍명월 21로통합하는 방안 검토
  - 청풍명월 21의 대표자를 도지사와 도의장 공동대표 방안 검토
  - 분과위원회에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의 3개국 주무과장 참여 추진
- 8. 문화재 보수정비 방법 등 개선
  - 우기 중 문화재 보수 공사를 지양
  - 부분공사를 지양하고 전체보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
- 9. 청원군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
  - 설치공사 즉각 중단
  - 법원 등의 유사작품 여부 심사 후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
- 10. 대청호 녹조 예방대책 추진
  - 분뇨처리 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
  - 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
  - 옥천군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추진

#### 【자치연수원:5건】

- 1. 교육과정 신설과 강화
  - 시민사회 이해, 거버넌스, 경제민주화, 사회적 경제 등과 연관 과정 신설
  - 의회과목, 남북통일, 성인지, 환경, 고령화, 다문화, 청렴윤리의식, 바이오, 태양광, MRO, 지역균형발전 과목 비중 강화

#### 2. 결원보충

- 교육운영과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
- 3. 외부 개방형 전문직 충원 검토
  - 교수요원, 교육 프로그램 기획 직원 등 외부 전문직원 충원 필요
- 4. 구내식당 운영방식 개선
  - 직영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
  -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법으로 개선

#### 5. 강사확대

- 의회, 언론, 시민단체 인사 증원

#### 【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: 5건】

- 1. "2012년 충북민속문화의 해"추진 사업중 우수사업 지속 추진방안 검토
  - 우수사업의 선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
- 2. 추진사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
  - 도민문화재대학, 문화유적답사 등 도민을 대상으로 공익적사업 전개 할 것
- 3. 문화재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강구
  - 전문성강화를 위해 학위 취득자 채용 및 현 연구원들의 학위 취득 방안 강구
- 4. 문화재연구원 비전 재설정 및 사업계획 목표수립 철저
  - 비전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임, 연구원 고유의 역할을 포함한 비젼으로 수정 검토
  - 전략 및 추진과제도 관행적 성격이 강하게 들며 능동적인 전략으로 수정 검토
  -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사업계획 목표 수립 철저
  - ※ 당초계획대비 실제 추진사업과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를 보임
- 5. 문화재연구원 이사회 참석수당 조정 검토
  - 도 및 타 시도와 비교 검토하여 참석수당의 합리적으로 조정 검토

#### 【(재)충북문화재단: 3건】

- 1.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사업 선정 육성 검토
- 2. 문화재단 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
  - 타시도와 비교한 조직정비, 예산확보 방안 등
  -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도의 부담비율 증대
  - 기금 증액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
  - 재단 자체사업비 증액
  - 5명의 직원 충원 필요
  - 사무차장의 민간인 교체
- 3. 조사, 연구 용역사업 등 업체 선정 다양화 강구
  -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특정업체가 아닌 다양한 시각에 의한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

## 나. 건의 및 촉구사항(7건)

#### 【공통사항: 4건】

- 1. 행정용어 순화운동 적극 동참
  - 최근 한류 바람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고조 되고 있음
  -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행정용어 순화운동에 적극 동참 각종 문서에 외래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동참 필요
- 2.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은 의회에 제출 지양
  - 예산 편성시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은사전절차를 이행 후 예산에 반영 할 것
- 3.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
  - 예산 집행계획을 효율적이고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계획 변경 등에
    따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.
- 4. 정부 및 도 주요 시책 홍보 철저
  -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 변경사항이나 신규 시책 등에 대하여대하여 각 부서별 홍보 철저

#### 【행정국: 2건】

- 1. 도지사의 시군순방(도정설명회) 합리적 일정 수립
  - 하반기 시군 순방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마무리되는 시기라 시군의 건의 사항 등을 당해연도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바, 시군순방이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필요
  - 시군순방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일정 추진 필요
- 2. 공직자 등의 정치적 중립방안 강구
  - 일선 시군 공무원은 물론 도의 지원금을 받는 직능단체가 선거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의 조치 필요

#### 【문화관광환경국: 1건】

- 1. 프로젝트(세계유산 등재)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예산 사장 방지
  -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은 도내 중요산성 7개소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50억원 (국비 20억원, 도비 30억원)이 투자하는 지속사업임.
  - 충북 고유의 특색이 있는 유산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을 무분별하게 추진함으로서 문화재청의 남한산성 우선 등재 추진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 할 뿐만아니라 남한산성 진행추이에 따라 추진방향을 재설정(당분간 보류)하며 예산을 삭감하기에 이르렀음.
  - 향후, 사업추진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.

# 8. 처리의견

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시행령 제51조 및 「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제19조에 따라 집행부 및 해당기관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.